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의11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